
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나. 의안번호 : 제 879 호
- 다. 제출일자 : 2022. 5. 30.
- 라. 회부일자 : 2022. 6. 1.

## 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제2항, 제150조제1항 및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82조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35조제3항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세입·세출결산, 기금결산, 재무제표, 성과보고서 등에 대한 결산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.

### 3. 결산개요

#### 가. 일반회계

##### 1) 세입결산

#### 세 입 결 산 현 황

(단위: 백만원)

회계 연도	예 산 액	예산현액	징수결정액 (A)	수 납 액 (B)	미수납액	미수납액 처리		수납율(%) (B/A)
						결손처분	다음연도 이 월 액	
2022	2,400	2,400	3,214	2,805	409	4	405	87.3
2021	3,529	3,529	2,218	1,839	379	0	379	82.9
2020	1,437	1,437	10,388	9,738	650	0	650	93.7

- 2022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4억 원이었으나 실제 32억 14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중 87.3%인 28억 5백만원을 수납하고 4억 9백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, 미수납액 중 4백만원은 결손처분하고 4억 5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.

##### 2) 세출결산

#### 세 출 결 산 현 황

(단위: 백만원)

회계 연도	예산액	전년도 이월액	변경 사용	전용	이체	이용	예비비	예산현액	지출액	다음연도 이 월 액	집행잔액 (불용율)
2022	726,407	0	0	0	0	0	5,452	731,859	731,516	0	343 (0.1%)
2021	6,322	190	0	0	0	0	1,124	7,636	7,277	0	359 (4.7%)
2020	6,383	0	1.2	0	10,493	0	4,110	10,493	9,877	190	426 (4.1%)

- 2022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(시설국, 도시철도국) 일반회계

예산현액은 예산액 7,264억 7백만원과 예비비 54억 52백만원을 포함한 7,318억 59백만원으로 이중 99.9%인 7,315억 16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.1%인 3억 43백만원이 발생되었음.

- 이 중 ‘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전출금’ 7,196억 5백만원과 ‘예비비’ 54억 52백만원은 도시철도국 세출 예산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임.

### 3) 예산의 이용 · 전용 · 이체 · 변경사용

- 예산의 이용은 없음.
- 예산의 전용은 없음.
- 예산의 이체는 없음.
- 예산의 변경사용은 1건 6백만원으로
  - 안전관리과 사무공간 재배치 공사

: 6백만원

### 4) 예비비 지출

- 예비비 지출은 2건 54억 52백만원으로
  - 9호선 3단계 919공구 공사대금 청구소송 판결금

: 15억 52백만원

  - 9호선 3단계 923공구 공사대금 청구소송 판결금

: 39억원

## 5) 다음년도 이월사업비

- 다음연도 이월비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모두 없음.

## 6) 집행잔액

- 집행잔액은 3억 43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0.1%에 해당하는 규모임.

### 집행잔액현황

(단위: 백만원)

회계연도	예산현액	집행잔액	불응율 (%)	비고
2022	731,859	343	0.1	
2021	7,636	359	4.7	
2020	10,493	426	4.1	

- 발생원인별 내역

-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: 3억 43백만원

## 4. 검토 의견

### 가. 일반회계

#### 1) 세입결산

### 세 입 결 산 현 황

(단위: 백만원)

회계 연도	예 산 액	예산현액	징수결정액 (A)	수 납 액 (B)	미수납액	미수납액 처리		수납율(% (B/A)
						결손처분	다음년도 이 월 액	
2022	2,400	2,400	3,214	2,805	409	4	405	87.3
2021	3,529	3,529	2,218	1,839	379	0	0	82.9
2020	1,437	1,437	10,388	9,738	650	0	650	93.7

#### 가) 개 요

-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세입예산현액은 24억원이었으나 실제 32억 14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중 87.3%인 28억 5백만원을 수납하고 4억 9백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, 미수납액 중 4백만원은 결손처분하고 4억 5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.

#### 나) 세수추계

- 당해연도 징수결정액 32억 14백만원은 예산현액 24억원의 133.9%로 8억 14백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, 이처럼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간의 차를 유발한 주된 세입항목을 살펴보면 [표]와 같음.

[표]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가 크게 발생한 항목

(단위: 백만원)

편성목	예산현액 (a)	징수결정액 (b)	수납액	(b)-(a)	징수결정 내역
경상적 세외수입					
기타이자수입	291	16	16	△275	○ 9호선 2단계 917공구 공사대금 소송 가지급 반환 보관금 이자수입 16백만원
임시적 세외수입					
위약금	248	10	0	△238	○ 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건립 설비공사(2차) 지연배상금
그외수입	1,833	2,809	2,789	976	○ 9호선 2단계 917공구 공사대금 소송 승소에 따른 가지급 반환금 2,774백만원 ○ 육아수당,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 반납 2백만원 ○ 성과연봉 과지급 반납 1백만원 ○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공사 고용개선 지원비 정산 환수금 12백만원
지난년도수입	28	379	0	351	

○ 경상적 세외수입 중 ‘기타이자수입’은 세입·세출 외에 위탁 공사비 보관금 및 공사 기성금과 같은 현금을 예탁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 및 일상경비의 이자수입으로 예산현액과 징수 결정액의 차가 2억 75백만원이 발생함.

- 이는 세입이 일정치 않아 최근 5년간('17년~'21년) 실적의 평균 액인 2억 91백만원으로 세입추계 하였던 것이나([표] 참조), '9호선 2단계 917공구 공사대금 소송 가지급 반환 보관금에 대한 이자수입 1천 6백만원 1건만이 징수결정됨에 따른 것임.

- 추후에는 사전에 이자수입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경우를 보다 면밀히 조사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.

[표] 기타이자수입의 최근 5년간 결산액 및 세수추계 산출근거('17년 ~ '21년)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2017	2018	2019	2020	2021 징수액(5월)
결산액	493	378	382	115	71
○ 세수추계 산출근거 - 최대·최소금액을 제외한 최근 5년간('17~'21)실적 평균액으로 추계 - (378백만원 + 382백만원 + 115백만원) ÷ 3 = 291 백만원 ※ '21년(최소), '17년(최대) 제외					

- '위약금'은 지체상금 물량 및 가격의 추정이 어려워 최근 5년간('16~'20년) 실적 평균액으로 추계하여 예산액 2억 4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([표] 참조), 예산액 대비 2억 38백만원이 감소한 1천만원을 징수 결정했는데,

[표] 위약금의 최근 5년간 결산액 및 세수추계 산출근거('16년 ~ '20년)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2016	2017	2018	2019	2020
결산액	254	261	3,468	18	230
○ 세수추계 산출근거 - 최대·최소금액을 제외한 최근 5년간('16~'20)실적 평균액으로 추계 - (254백만원 + 261백만원 + 230백만원) ÷ 3 = 248 백만원 ※ '19년(최소), '18년(최대) 제외					

- 이는 'G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건립 설비공사(2차) 지연배상금 1건만 발생함에 따라 세수추계액과의 차이가 발생한 것

으로 예산편성 전 준공기한 초과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사전에 조사하여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.

○ ‘그외수입’의 경우 공사 예산집행 정산금, 소송비용 환수금 등 기타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으로 예산액 18억 33백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28억 9백만원으로 9억 76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,

- 이는 최근 5년간(’17년~’21년) 세수 실적을 기준으로 최대·최소금액을 제외한 최근 3년간 실적 평균액으로 세입을 추계하였으나 9호선 2단계 917공구 공사대금 소송 승소에 따른 가지급 반환금(27억 74백만원) 등 7건이 징수결정됨에 따른 것임.

- 세목의 특성상 정확한 추계가 어렵다는 측면은 인정되지만 매년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액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바, 최적의 추계 방안을 강구하여 차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음.

[표] 그외수입의 최근 5년간 결산액 및 세수추계 산출근거(’17년 ~ ’21년)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2017	2018	2019	2020	2021(전망액)
결산액	2,116	737	1,016	9,526	2,366
<p>○ 세수추계 산출근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최대·최소금액을 제외한 최근 5년간(’17~’21)실적 평균액으로 추계</li> <li>- (2,116백만원 + 1,016백만원 + 2,366백만원) ÷ 3 = 1,833백만원</li> <li>※ ’18년(최소), ’20년(최대) 제외</li> </ul>					



- ‘지난연도수입’은 2022년도 예상 체납액(5억 57백천만원)에 최근 5년간(‘16~’20년) 평균 징수율(5.0%)을 반영하여 당해연도 예산 현액 2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실제로는 3억 79백만원이 징수결정되었고, 수납액은 없음.
- 금회 지난연도 수입의 결산 결과를 보면 소송 등에 의한 체납<sup>1)</sup>이 많아 실 징수액을 기준으로 징수결정하였으나 실제 수납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적극적인 징수의지를 가지고 납부를 독려하여 고질적인 장기체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할 것임.

다) 미수납액

- 금회 미수납액은 전년(3억 79백만원) 대비 2천 6백만원 증가한 4억 5백만원인데, 공사 지연배상금 등 총 19건으로 세부 내용은 [표]와 같음.

[표] 미수납액 세부 내역

(단위: 원)

연번	과목	과세년월	성명/법인명	과세대상	금액	사유
계					405,404,530	
1	지난연도수입	2014-02	주식회사 내이드	에너지제로하우스건립 서울중앙지법 2013카합 50790 소송비용액확정(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 99971 공사대금)	5,476,150	무재산
2		2014-03	김○현(대한불교천우종무학사)	강남순환 도시고속 도로건설공사관련 토지인도 사건 관련 소송비용액 확정(2013카합50667)	222,830	무재산
3		2016-01	김○채	강남순환 도시고속 도로건설공사 관련 수위지방법원안산지원 2015카합50070 소송비용액(본안사건:2014가단 108577)	430,190	무재산
4		2016-02	박○진	선사로~고덕지구간 도로확장공사 소송비용액 확정 및 판결금	11,760,000	무재산

1) 지난연도 수입: '14~'20년까지 체납금 소송비용 등 15건

5		2016-08	김○수	선사로~고덕지구간 도로확장공사 구간내 명도소송 비용(2015가단112017)	5,775,120	압류
6		2016-10	유진그린환경(주)	에너지제로하우스 신축공사-소송비용액 확정관련 회수금(서울고등법원 2015카합51010)	499,360	무재산
7		2017-04	박○식	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 소송비용액 확정(2016카합53615)	1,388,080	무재산
8		2017-04	김○화	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 소송비용액 확정(2016카합53615)	756,720	압류
9		2017-09	박○식	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 구간내 건물철거 집행비용액확정에 따른 비용환수(2016타기100166)	10,276,750	무재산
10		2017-09	김○화	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 구간내 건물철거 집행비용액확정에 따른 비용환수(2016타기100166)	2,997,320	압류
11		2018-06	누리종합건설(주) 대표 전○열	성동소방서 신축공사 준공지연에 따른 지연 배상금	172,776,720	압류
12		2020-01	도랑기업(주)	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지연 배상금	84,418,810	폐업및부도
13		2020-02	도랑기업(주)	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선금 반환	67,937,860	폐업및부도
14		2020-07	(주)가공	서남권 50+캠퍼스 경비 정산 부적정 금액 환수금	8,590,000	자금압박
15		2020-12	도랑기업(주)	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선금 이자	1,845,670	폐업및부도
16	그외수입	2022-02	임○임	과년도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액 환수	2,924,130	체납
17	위약금	2022-08	(주)다원이엔에스	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건립 설비공사(2차) 지연 배상금	10,625,740	자금압박
18	그외수입	2022-10	국민에코(주)	G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준공정산 초과금액 환수	5,284,740	자금압박
19	그외수입	2022-10	예강건설주식회사	G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준공 정산금 환수	11,418,340	자금압박

[표] 미수납액 내역

(단위: 백만원)

예 산 과 목	건수	미수납액	비 고
계	19	405	
기타수입	4	3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자금압박</li> <li>- 1건 11백만원</li> <li>◦ 부도 등</li> <li>- 2건 16백만원</li> <li>◦ 퇴직공무원</li> <li>- 1건 3백만원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위약금 1건 11백만원</li> <li>- 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건립 설비공사 지연배상금</li> <li>◦ 그외수입 3건 19백만원</li> <li>- 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준공 정산 환수 2건</li> <li>- 과년도 초과근무수당 환수 1건</li> </ul>			
지난연도수입	15	37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재산압류 중</li> <li>- 4건/182백만원</li> <li>◦ 폐업 및 부도 등</li> <li>- 11건/193백만원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지체상금 2건 2억 57백만원</li> <li>- 성동소방서 신축공사 준공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</li> <li>- 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지연배상금</li> </ul>			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그외수입 13건 1억 18백만원</li> <li>- 공사비 정산 환수금 3건 78백만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서남권 50+캠퍼스 경비 정산 환수</li> <li>· 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선금 및 이자 반환 2건</li> </ul> </li> <li>- 소송비용 회수금 10건 40백만원</li> </ul>			
--	--	--	--

- 미수납액은 지난연도수입이 15건 3억 75백만원으로 주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, 미수납 사유를 살펴보면 폐업 및 부도(11건 1억 93백만원), 자금압박(3건 27천만원)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.
- 매 결산 심사때마다 미수납액의 고질적인 체납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해왔으나 매년 이월되고 있는 상황으로 고질적 체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와 함께 초기체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음.

## 2) 세출결산

### 세 출 결 산 현 황

(단위: 백만원)

회계 연도	예산액	전년도 이월액	변경 사용	전용	이체	이용	예비비	예산현액	지출액	다음년도 이월액	집행잔액 (불용액)
2022	6,801	0	0	0	0	0	0	6,801	6,459	0	343 (5.0%)
2021	6,322	190	0	0	0	0	1,124	7,636	7,277	0	359 (4.7%)
2020	6,383	0	0	0	0	0	4,110	10,493	9,877	190	426 (4.1%)

### 가) 개 요

-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8억 1백만원으로 95%인 64억 59백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%인 3억 43백만원이 발생되었음.

### 나) 집행잔액 (불용액)

- 시설국 소관 당해연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%인 3억 43백만원으로 지난연도 대비 0.3%p 증가(4.7%→5.0%)하였음([표]참조).

[표] 시설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

(단위: 천원)

세부사업명	예산 현액	지출액	이월 액	집행잔액 (불용액)	불용율 (%)	불 용 사 유
일반회계	6,801,388	6,458,858	0	342,500	5.0	
공공건축물안전 자문단운영	13,500	13,411	0	59	0.4	
효율적인 청사관리	4,968,074	4,839,155	0	128,919	2.6	- 전화기 내용연수(10년) 경 과에 따른 인터넷 전화기 구매교체 낙찰차액
건설공사장 안전점검	398,283	391,630	0	6,653	1.7	- 자문위원수당 집행잔액
건설공사장 풍수해 및 제설대책	14,500	12,855	0	1,645	11.3	- 비상근무 경상비 집행잔액
건설정보관리시스템 (One-PMIS) 유지관리	397,628	383,652	0	13,976	3.5	- 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
차세대 건설정보관리 시스템 구축	217,387	199,217	0	18,170	8.4	- 계약심사를 통한 감액 과 낙찰차액(CCTV, 대시 보드)
발점부과심의위원회 운영	9,600	2,260	0	7,340	76.5	- 공사담당 및 안전관리과 안전점검 등으로 발점부 과 신청건수 감소(2건)
기본경비	782,416	616,678	0	165,738	21.2	- 국내여비 등 경상경비 집행잔액

- 먼저, ‘별점부과심의위원회’ 사업은 '20년 11월 신설된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제87조의3<sup>2)</sup>에 의거하여 별점부과 이의신청 시 외부전문가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별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의무화함에 따라 외부전문가 자문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금회 예산현액 960만원 대비 76.5%인 734만원을 불용하였음.
- 이는 예산편성 시 '21년 개최 실적(7회)을 감안하여 총 8회 개최를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심의위원회가 단 2회만 개최됨에 따른 것임.

[표] ‘별점부과심의위원회’ 예산 집행내역

(단위: 천원)

구 분	2022년예산편성 (B)	2022예산집행 (A)	불용액 (B-A)	불용률
계	9,600	2,260	7,340	76.5%
사무관리비	9,600	2,260	7,340	76.5%

- 별점심의위원회는 건설공사의 부실사항에 대한 별점이 부과된

- 
- 2)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제87조의3(별점심의위원회) ① 제87조의2에 따른 별점 부과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측정기관별로 별점심의위원회를 둔다.
- ② 별점심의위원회는 측정기관이 별점을 부과한 사유·근거와 별점 부과 대상자가 심의를 의뢰한 사유·근거를 충분히 고려하여 심의해야 한다.
- ③ 별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④ 별점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, 발주청 또는 인·허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, 임원·직원 중에서 측정기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- ⑤ 별점심의위원회 위원은 건설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측정기관이 위촉한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별점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결과에 대해 부과대상자가 이의 신청을 한 경우에만 개최된다는 특수성에 따라 위원회 개최 횟수를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,

- 심의위원회 개최 횟수가 저조할 경우 불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바, 분기별 또는 반기별 등 개최 횟수를 지정하여 이의신청 안전을 취합하여 심의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여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.

[표] 최근 4년간 벌점부과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개최 실적

연도	위원회 개최횟수 (회)	안건수 (개)	안건수	
			벌점부과 심의	이의신청 심의
2019	7	20	14	6
2020	8	18	11	7
2021	7	10	6	4
2022	2	15	8	7

- 다음으로, ‘기본경비’는 정책사업 수행 부서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당해연도 예산현액 7억 82백만원 대비 21.1%인 1억 65백만원을 불용하였는데,
  -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자제 복무지침에 따라 국내여비 1억 6백만원, 공공운영비 4천 1백만원 등을 미집행함에 따른 것임.

[표] 2022년 ‘기본경비’의 예산과목별 집행내역

(단위: 백만원)

예산과목	예산액	지출액	집행잔액 (불용액)	불용율 (%)	비 고
기본경비	782	617	165	21.1	
사무관리비	366	359	7	2	집행잔액
공공운영비	66	25	41	62.1	코로나19로 차량운행 유지비 감소
국내여비	208	102	106	51	코로나19로 출장여비 감소
기관운영 업무추진비	20	20	0	0	-
정원가산 업무추진비	7	7	0	0	-
부서운영 업무추진비	31	30	1	3.3	집행잔액
직책급 업무수행경비	84	74	10	11.9	집행잔액

- 마지막으로, ‘효율적인 청사관리’는 행정장비 유지와 안전하고 쾌적한 사무환경 개선으로 직원의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현액 49억 68백만원 대비 2.9%인 1억 29백만원을 불용하였는데,
  - 세부내역을 살펴보면, 인터넷 전화 교환기 시스템 구축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.2%에 해당하는 1억원을 불용하고, 코로나19로 인해 국외업무여비 100%에 해당하는 1천만원을 불용함에 따른 것임.
  - '21년도에도 코로나19 재확산 추세로 인해 국외업무여비 3천만원 전액을 감추경한 바 있는데. 이와 같이 국외 업무 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사전에 감추경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하겠음.



[표] 2022년 ‘효율적인 청사관리’의 예산과목별 집행내역

(단위: 천원)

예산과목	예산액	지출액	집행잔액 (불용액)	불용율 (%)
효율적인 청사관리	4,968,074	4,839,155	128,919	2.9
기간제근로자등보수	37,079	36,552	527	1.4
사무관리비	4,051,571	4,048,004	3,567	0.1
공공운영비	130,624	126,981	3,643	2.8
국외업무여비	10,000	-	10,000	100
시책업무추진비	100,000	97,943	2,057	2.1
특정업무경비	102,600	94,401	8,199	8.0
자산및물품취득비	536,200	435,274	100,926	18.2

다) 예산이용 · 전용 · 이체 · 변경 사용

- 예산의 이용 · 전용 · 이체는 없음.
- 예산변경은 ‘효율적인 청사관리’ 1건 6백만원으로, 이는 '22년 1월 26일자로 안전관리과 정원이 증가(12명→16명)함에 따라 부족해진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사무공간 재배치 공사 중 부족한 공공운영비 확보를 위해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여 충당·사용함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.

[표] 변경사용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연번	정책사업	단위사업	세부사업	통계목	예산액	변경금액		변경승인 일자
						증액	감액	
1	도시기반 시설관리	도시기반 시설관리	효율적인 청사관리	공공운영비 (100-201-02)	125	6	-	'22.7.14.
	도시기반 시설관리	도시기반 시설관리	효율적인 청사관리	사무관리비 (100-201-01)	4,058	-	6	